

나. 연구개발비 사용제한

● 최대 산정비율의 제한

-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, 위탁연구개발비, 간접비 총액은 최대 산정비율로 제한

● 비목(세목) 신설의 제한

-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이 과제 선정시 필요 여부를 결정하므로 연구 기간 중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후에 신설 가능
-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당초 연구 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 불가능

● 사용 기간의 제한

- 연구비는 협약(연구)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
- 기기·장비는 해당 연차 연구 종료일까지 도착 및 연구비 지급 완료,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도착 및 검수 완료
- 재료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 지양